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<u>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</u>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북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담당자 이지윤

전확 02-3399-4866 / 팩스 02-3399-4801

보도자료 2020. 6. 12.(금)

제 목

아파트 경비원 자살사건 가해자 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(부장검사 정종화)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상해, 협박 등을 가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아파트 입주민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(보복상해·감금) 등으로 6. 12. 구속기소하였음

□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
 - A○○(48세, 음반기획자)
-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 - '20. 4. 21.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3중 주차되어 있던 피고 인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[상해]
 - '20. 4. 27. 피해자가 4. 21.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간 후약 12분간 피해자를 감금한 채 구타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함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감금·상해)]

- '20. 4. 27. 위 감금·상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사표 제출에 응하지 아니함[강요미수]
- '20. 4. 27. 위 강요미수 범행 후 피해자가 4. 23. 관리소장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허위고소[무고]
- '20. 5. 3.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림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(보복폭행)]
- '20. 5. 4.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이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 내용과 상관없고 발병일 등을 가린 채 촬영된 별개진단서의 사진을 전송[협박]

② 수사경과

- '20. 4. 28. 피해자가 피의자를 상해 등으로 고소
- '20. 5. 10. 피해자 투신 자살
- '20. 5. 19. 구속영장 신청 및 검찰 청구 → 5. 22. 구속 영장 발부
- '20. 5. 29. 사건 송치
- '20. 6. 12. 구속 기소

③ 참고사항

○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하여 구속 송치된 사건과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허위임을 밝혀내, 무고죄를 추가 인지하여 병합 기소함

○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도 거제자 기의의 사기하	생계비	지원
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함 ○ 검찰은 다양한 형태의 갑질 범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고질적인 갑질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.끝. ☑	엄벌을	통해
고열적인 접절단세 단결할 위에 그릭할 예정함.ㅌ. ☑		